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 등의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의무 강화〉

■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05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 국가 등의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의무 강화 ·3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4. 8. 9.
3. 회부일 : 2024.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마트에서 8만3천원어치 반찬을 훔친 6·25 참전용사의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며 참전유공자의 생활 실태나 국가 예우의 적절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는 대한민국의 국격, 나아가 존재가치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것임.

한편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수는 2022년 5월 31일 24만3314명에서 2023년 5월 31일 22만6491명(6·25 4만7204명, 월남전 17만7978명, 6·25 및 월남전 1,309명 등)으로 불과 1년 만에 약 6.9%, 1만6823명이 감소하는 등 고령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 하기 위하여서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이에 개별 수당 지원 외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하며, 관련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제5호 및 제12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 국가 등의 참전유공자 기초생활 보장 의무 강화

-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사업 수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이 법에 규정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및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u>
<u><신설></u>	제12조의4(생활환경 등의 조사) ① <u>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u> 1. <u>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u>

2. 이 법에 따른 사업 등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에 대한 참전유공자의 만족도
3.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 수립 및 이
행 현황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매년 전수조
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u>야 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기준</u> <u>일, 방법 등 조사에 관한 세부</u> <u>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u> <u>다.</u>
--	---

- 최근 생활고에 시달린 참전유공자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참전유공자의 열악한 생활 실태와 함께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
-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매년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국가 등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등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참전유공자의

1) 동아일보, “마트서 반찬 훔친 노인, 6·25 참전용사였다...‘생활 어려워서’“, 2023.06.23.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국가 등의 책무로 이미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²⁾을 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생계가 곤란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³⁾, 보훈재가

2) “참전유공자의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3)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하 생략)

복지서비스⁴⁾, 주택의 우선 공급⁵⁾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동 법 제4조의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실시 주기와 범위를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⁶⁾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전체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중 약 1만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함.

4)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참전유공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5)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거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6) 「국가보훈 기본법」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셋째, 개정안에 따라 생활환경 조사를 매년 실시하거나, 모든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논의해야 할 것임.
- 참고로, 국가보훈부 추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22만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경우 약 85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종합하면,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 보장 관련 시책 마련 의무를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 등이 참전유공자의 기초생활 보장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선언적·유도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별도의 참전유공자 생활환경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가 재정 여건 및 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의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의 참전유공자의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가 「국가보훈 기본법」의 실태조사와 중복되며,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7

□ 조사 목적 및 경과

-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에 관한 기초통계 등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 **(경과)**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12년)

제16조(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 실태, 국민의 보훈의식 등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

- **(조사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 등
 - 표본규모 : 10,000가구 * 신뢰성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조사기관)** 통계청 및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조사

위탁수행기관	통계청	전문연구기관
계약방법	지정 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예산	690백만원	100백만원
수행업무	통계조사 대행	문항설계, 결과분석
기간	'21. 1~12월	'21. 3~'22. 2월

- **(조사방법)** 표본추출 및 방문·면접조사
- **(조사항목)**
 - 가구조사 : 가구일반, 주거, 가계소득 및 지출, 자산·부채 등
 - 개인조사 : 문화·여가, 사회참여, 가족관계, 경제활동, 보건의료 이용, 노후보장, 보훈정책 인식 및 만족도 등

□ 연 혁

대구분	소구분	내용	비고
1973년 이전		- 보훈행정 전산화에 앞서 자력기록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 대상자의 가정방문을 통해 실태조사 - 실제 생존 및 거주지 주소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침	- 국가보훈처 창설 이후 최초의 직접가정방문
1974년 ~1975년	1974년	- 1974년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 확정함.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 실시	- 실태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 실시 등 실태조사의 요령 구체화 노력
	1975년	- 표본 및 저소득자 가구대상 실태조사 실시	
1976년 ~1978년	1976년	- 국가보훈대상자 전수조사(13만 6783명 대상) - 생활등급 35개 등급 분류	- 지자체에 조사자명단을 보내 간접조사 후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하여 행정의 효율화 기함
	1977년	- 생활등급 17등급 이하 부분적 실태조사 실시	
	1978년	- 생활등급 12등급 이하 부분적 실태조사 실시	
		- 생활등급 21개 등급으로 조정	
1979년 ~1987년	1979년	- 1980년대 보훈정책자료 수집위해 전수실태조사 실시	-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대두됨 - 생활등급기준표 12등급으로 조정
	1980년 ~1982년	- 매년 전 보훈대상자의 1%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 1981년 애국지사 및 유족, 1급상이자 전수조사 - 1982년 월남귀순자, 무공수훈자 및 1급상이자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실시(전 대상자의 소득추계 - 생계안정층 64%에 대하여 서면조사, 생계유지층 이하 자인 36%만 방문조사) - 생활기준표상의 생활등급 12개 등급 통합조정	
	1983년	- 매년 표본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저소득층 중점 부분조사 실시	
		- 1985년 저소득 무공·보훈수훈자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병행	
1988년 ~2012년	1988년	- 전수실태조사 실시 - 생활등급 분류 기준 9등급의 하한기준을 도시근로자의 평균가계비 63%→60%로 조정하여 6등급 이하의 하층등급을 10%단위로 구분	- 1988년에는 최초로 보훈대상자들의 의식구조 조사를 통하여 사회지표작성 가능케 함. 뿐만 아니라 복지세대 실태까지 정밀조사하여 실태조사의 질적향상 도모
	1989년	- 표본조사 및 여건변동자 수시조사 병행 실시	
	~2007년	- 생활등급 분류기준표 12등급으로 분류하여 현재까지 적용	
	2008년 ~2012년	- 2007년 법령개정으로 출가한 딸도 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됨에 따라 생활실태조사지침개선	
2012년 이후	2012년 ~현재	- 3년마다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생활수준 모형, 일반사회지표와의 비교분석 등 정책자료 제공 - 1회('15년, 한국갤럽), 2회('18년, 통계청+보사연) 3회('21년, 통계청+보사연)	- 국가보훈기본법 제16조 개정('12.)으로 3년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강행 규정)

□ 주요 조사항목 및 지표

○ 가구조사표

영역	지표내용
가구 일반사항	현재가구원수, 성명, 성별, 출생년도, 동거여부,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장애분류 등 등급, 만성질환, 공적연금 가입형태, 가입 및 수급중인 공적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수급형태, 교육급여 수급자수
주거상황	거처유형, 입주형태, 주택가격(전세금.월세보증금 포함), 월세액, 주거위치, 방의 수, 주거면적, 주택연금 가입 여부
가계지출	<소비지출>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주거비(월세제외, 광열수도비 포함), 교육비(보육비포함),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전체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세금,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 기타소비지출, 전체 비소비지출 <추가적 지출 항목>
가계소득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① 보훈급여금 ② 공적연금 ③ 기초연금 ④ 양육수당 ⑤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⑥ 장애수당(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⑦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⑧ 기타 정부 보조금 <사적이전소득>
자산	소유 및 점유 부동산, 금융자산(예금, 적금.주식.채권.펀드, 갯돈 등), 자동차, 기타자산(농기계, 농축산물 등 기타재산)
부채	총 부채액, 총 부채액 중 금융기관대출·카드대출·보훈처 생업지원 대출, 부채상환능력(원금상환액, 이자지출액), 부채원인, 부채 규모 변화, 세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
추가질문	작년 기준 가구원수

○ 개인조사표

분야	구분항목	지표내용
문화/ 여가	여가/문화에 관심	-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 정도
	주된 여가유형	-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유형 - 여가활동을 함께 한 사람
	여가활동 관련 방문 및 관람 여부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여부, 레저시설 이용 여부
	관광여행 횟수	- 지난 1년 동안 여행 경험여부, 국내 및 해외 여행여부
	여가 활용 만족도	- 평소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 불만족 이유
	향후 여가활동	- 앞으로 희망하는 여가유형
	오락·문화 지출	- 지난 1년 동안의 오락·문화비 평균 지출 금액
사회 참여	사회적 관계망	- 어떠한 상황(몸이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갑자기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단체 참여	- 단체 참여 활동 경험여부, 지난 1년 간 주로 활동한 단체
	자원봉사 관련	- 지난 1년 간 자원봉사 활동 참여여부 및 향후 활동의사 여부
	계층의식	- 본인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
	계층이동 인식	- 계층이동가능성, 자식 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
	신뢰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정도
가족 관계	가족관계만족도	- 주관적 가족관계 만족정도
	가족도움	- 지난 1년간 자녀, 부모, 형제 등으로부터 항목별(고민상담(정서적도움),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 경제적 도움(현금지원, 현물지원))도움 받은 여부
	만나는 정도	- 지난 1년 간 친·인척과 만난 정도
	연락 정도	- 지난 1년 간 친인척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

분야	구분항목	지표내용
보건 의료	자격	- 주 이용 의료제도
	건강상태	- 건강상태(걷는데 지장 정도, 목욕지장정도, 일상생활지장정도 통증 및 불편감 정도, 불안우울정도) - 주관적 건강상태, 병원진료 질병종류
	의료이용실태	- 주 이용의료기관종류, 주 의료기관 이용이유, 선호의료기관 - 의료기관 선호이유, 병·의원 이용여부, 병의원 이용일수(1년 간) - 본인부담금(1년 총액), 건강검진여부
	의료비 부담 수준	- 본인부담금 부담 수준, 치료포기경험여부 및 이유
	장기요양보험급여	- 장기요양급여수급여부, 장기요양등급, 받은급여종류
	정신건강	- 일상생활 스트레스정도, 상황별 스트레스 경험여부 - 심리상담지원프로그램 이용의향여부
경제 활동	현재 시점에서 경제활동참여 상태	- 현 직장에서의 근무 시작 시기, 주당 평균근무일수, 평균근무시간 - 정부 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직업 만족도 - 주요 참여 산업, 참여 직업 및 사업장 종사자 규모 - 경제활동 참여 이유, 사회보험 및 민간보험 가입 여부
	구직활동	-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험과 주된 이유 - 구직활동 중 필요한 사항,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
	향후 경제활동	- 참여하고 하는 산업 및 일자리 분야, 희망 소득수준
	직업선택 요인	- 직업 선택시 고려사항
	취업 수강료 지원	- 취업수강료 지원 경험 여부, 취업수강료를 지원받은 프로그램
노후보장		- 노후를 위한 준비 수단, 노후를 위한 필요 금액 - 노후준비에 부담하는 금액, 연금 수급 여부 - 노후 준비 상황에 대한 인식, 희망하는 주거종류/세부종류/주택형태 - 노후 거주희망지역, 노후에 필요한 희망서비스 - 희망 보훈섬김이 서비스종류, 희망 안장유형, 지역 및 방법
정책 서비스	보훈정책 서비스	- 인지여부, (사회적)필요성, 경험여부, 만족도
	보훈서비스 이외	- 노인 및 장애인대상 서비스 이용경험
보훈대상자 인식		-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 및 이유

분야	구분항목	지표내용
정책 인식 및 욕구		- 국가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불만족이유 및 확대 필요분야 - 의료지원 개선사항, 교육지원 여부, 필요한 교육지원 제도 -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 제도

□ 타 기관 유사 실태조사 비교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가계금융 복지조사	국민사회조사	국민생활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보훈대상 1만가구	국민 2만가구	국민 3만7천명	국민 2만가구	노인 1만명
국가보훈처	통계청	통계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3년	1년	1년	3년	3년
[가구조사] 1. 가구일반사항 2. 주거상황 3. 가계지출 4. 가계소득 5. 자산 6. 부채 [개인조사] 1. 문화/여가 2. 사회참여 3. 가족관계 4. 보건의료 5. 경제활동 6. 노후보장 7. 정책서비스 8. 인식 및 욕구	1. 가구구성 2. 자산(금융,부동산) 3. 부채 4. 소득 5. 가계지출 6. 노후생활	[사회지표체계 10개 부분에 대한 조사] 1. 복지 2. 사회참여 3. 문화와 여가 4. 소득과 소비 5. 노동 6. 보건 7. 교육 8. 안전 9. 가족 10. 환경	1. 가구일반사항 2. 월평균 생활비 3. 소득 4. 부채, 이자 5. 자산 6. 주거 7. 생활여건 8. 건강 및 의료 9. 에너지 10. 복지제도 인식	1. 가구일반사항 2. 건강상태 3. 기능상태와 간병수발 4. 여가 및 사회활동 5. 경제활동 6. 가족 및 사회관계 7. 가족간도움 8. 생활환경 9. 인지기능

(자료 : 국가보훈부)